

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요지

개정 : 2020.01.16.

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
제16조(관리감독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
제17조(안전관리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
제18조(보건관리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
제29조(안전보건교육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
제34조(법령 요지의 게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
제36조(위험성평가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
제37조(안전·보건표지의 부착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·시설·물질에 대한 경고,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·안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
제38조(안전조치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제39조(보건조치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제41조(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제51조(작업중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제57조(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·원인 및 보고 시기, 재발방지 계획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제63조(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	<input type="checkbox"/>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
제80조(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조치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
제84조(안전인증)	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해·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
제93조(안전검사)	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	<input type="checkbox"/>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
제125조(작업환경측정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
제129조(일반건강진단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
제130조(특수건강진단)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

* 기타 법 세부사항은 법제처에서 '산업안전보건법'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